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허14356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A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한결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석운, 김도율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원

담당변리사 김인한, 반응병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3. 11. 1. 2023당18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517929호의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 1) 발명의 명칭: 부력 구조가 개선된 수륙양용버스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22. 11. 23. / 2023. 3. 30. / 특허 제2517929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수륙양용버스의 외관을 구성하는 외관부가 알루미늄 합금 재료로 구성되는 수륙양용버스에 있어서, 승객이 탑승하여 위치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상부 데크(111)를 포함하는 상부 본체부(110); 및 상기 상부 본체부(110)의 하부에 구성되는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하부 본체부(120);를 포함하고, 상기 하부 본체부(120)는, 상기 하부 본체부(120)의 내측에 포함되는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메인 샤시(140); 상기 메인 샤시(140)의 양측에 배치되는 부력 공간부(130); 상기 하부 본체부(120)에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상기 메인 샤시(140)의 표면에 접하는 메인 샤시 고정부(125); 및 상기 메인 샤시(140)와 상기 메인 샤시 고정부(125)를 고정하는 제1 볼트 결합부

(14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력 구조가 개선된 수륙양용버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 (삭제)

【청구항 4 내지 8】 (각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권자인 피고는 2023. 5.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부력을 위한 공간구조가 있는 수륙양용버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위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3. 9. 27.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부력을 위한 공간구조가 있는 수륙양용버스에 관한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와 같이 보정하였다(이와 같이 특정된 실시형태를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당1800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원고가 2024. 8. 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2024당2343호로 심리한 다음, 2025. 1. 23. '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이 전부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무효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가 특허법원에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이 2026. 5. 20.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나,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효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을 무효로 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을 무효로 한 부분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특허법원 2025허10282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	----	-----

	판사	박은희
--	----	-----

	판사	권원명
--	----	-----

확인대상발명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 부력을 위한 공간구조가 있는 수륙양용버스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상부 본체부와 하체 본체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전면부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측면부의 결합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후면부 샷시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 5는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부력 공간부와 연료통을 촬영한 사진이다.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부력 공간부 바닥면에 형성된 경사 구조와 빌지 킬(Bilge Keel)을 촬영한 사진이다.

도 7은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부력 공간부, 부력 공간 지지부, 관통홈, 빌지 킬의 배치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 8은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샤프트 수밀 베어링의 연결구조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 9는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후면부 샷시를 촬영한 사진이다. 촬영한 사진이다.

도 10은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전면부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도면부호의 설명>

A-1 : 상부 본체부

A-2 : 하부 본체부

A-3 : 메인 샤시

A-4 : 부력 공간부

A-5 : 메인 샤시 고정부

A-6 : 제1 볼트 결합부

E : 연료통

E-2 : 제2 볼트 결합부

F : 바닥면의 경사 구조

G : 빌지 킬(Bilge Keel)

H : 부력 공간 지지부

I : 수밀 베어링

3. 상세한 설명

(1) 발명의 목적

이 건 확인대상발명은 부력을 위한 공간구조가 있는 수륙양용버스에 관한 것으로,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본체부에 볼트 결합에 의해 스틸 재료의 메인 샤시를 고정하는 구조를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의 수륙양용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부력 공간부의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부력 공간부의 내측에 연료통을 배치하는 구조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발명의 구성

확인대상발명은 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부 본체부(A-1)와 하부 본체부(A-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수륙양용버스의 외관을 구성하는 외관부가 알루미늄 합금 재료로 구성되는 수륙양용버스로서, 승객이 탑승하여 위치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상부 데크를 포함하는 상부 본체부(A-1); 및 상기 상부 본체부의 하부에 구성되는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하부 본체부(A-2);를 포함하고, 상기 하부 본체부는 상기 하부 본체부의 내측에 포함되는 스틸 재료의 메인 샤시(A-3); 및 상기 메인 샤시의 양측에 배치되는 부력 공간부(A-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도 2 내지 도 4, 도 8, 도 9,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하부 본체부(A-2)에는 메인 샤시 고정부(A-5)가 형성되어, 제1 볼트 결합부(A-6)에 의해 상기 메인 샤시 의 상부면에 상기 메인 샤시 고정부가 고정된다. 여기서 상기 제1 볼트 결합부는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다.

상기 부력 공간부(A-4)는 수륙양용버스에 부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박스(Box)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메인 샤시(A-3)의 양측에서 상기 수륙양용버스의 길이 방향인 종방향으로 배치된다. 또한, 상기 부력 공간부의 내측에는 연료통(E)이 배치되어 있다(도 5 참조).

또한, 상기 부력 공간부(A-4)는 상기 메인 샤시(A-3)의 양측에서 상기 수륙양용버스의 길이 방향인 종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박스 형태의 바닥면은 상기 수륙양용버스의 하부 방향으로부터 상부 방향으로 상승하는 경사 구조(F)가 형성되도록 구성된다(도 6 참조).

또한, 상기 부력 공간부(A-4)의 바닥면에는 빌지 킬(Bilge Keel: G)이 형성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빌지 킬은 상기 수륙양용버스의 종방향으로 형성되며, 상기 부

력 공간부의 바닥면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상기 수륙양용버스의 하부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된다.

한편,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부력 공간부의 내측에는 다수의 부력 공간 지지부(H)가 설치된다. 상기 부력 공간 지지부(H)는 상기 부력 공간부의 내부를 지지하여 상기 부력 공간 지지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기 연료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부력 공간 지지부는 상기 부력 공간부의 종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며, 상기 부력 공간 지지부가 상기 부력 공간부의 내측에서 상기 부력 공간부를 구성하는 내측면을 지지하는 패널 형태로 구성되고, 상기 부력 공간 지지부의 중심부에는 상기 연료통이 관통되도록 배치되기 위한 관통홀이 형성된다.

한편,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엔진으로부터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에는 수밀 베어링(I)을 연결함으로써, 모터로부터의 구동력을 바퀴 또는 스크류에 전달함과 동시에, 상기 모터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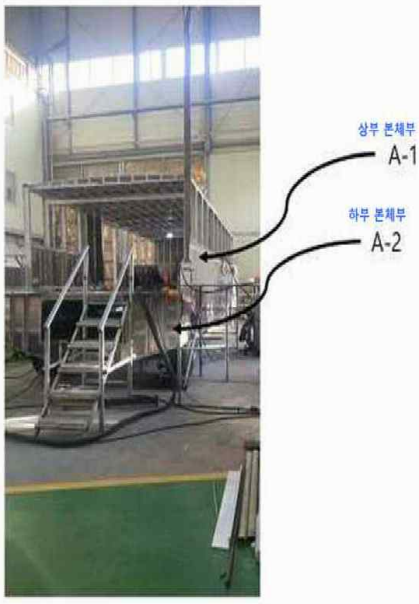
(3) 발명의 효과

확인대상발명의 수륙양용버스는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본체부에 볼트 결합에 의해 스틸 재료의 메인 샤시를 고정하는 구조를 통해, 견고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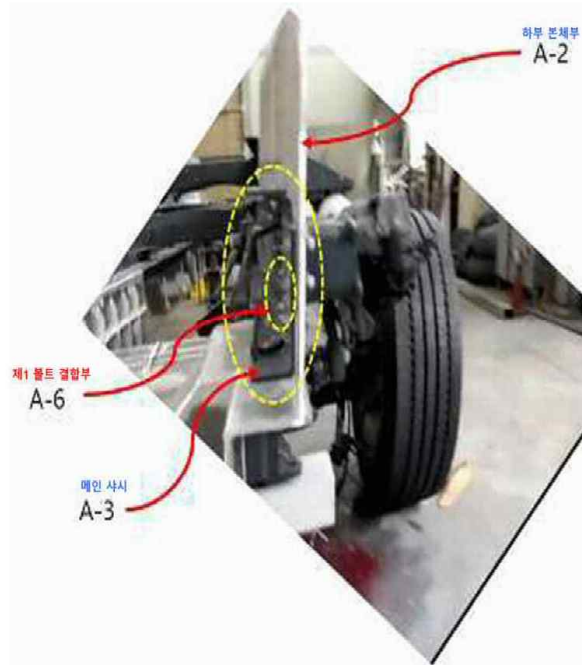
또한, 부력 공간부의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부력 공간부의 내측에 연료통을 배치하는 구조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력 공간부의 바닥면의 경사 구조와 빌지킬(Bilge Keel) 구조물을 통해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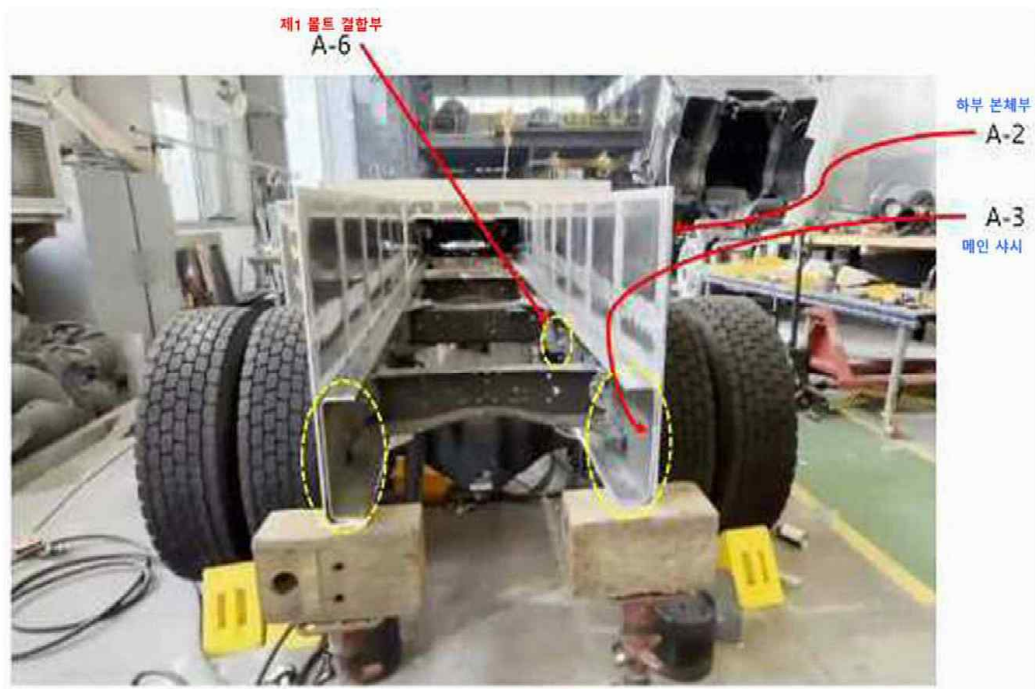
도 1.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상부 본체부와 하체 본체부를 촬영한 사진



도 3. 확인대상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측면부의 결합상태를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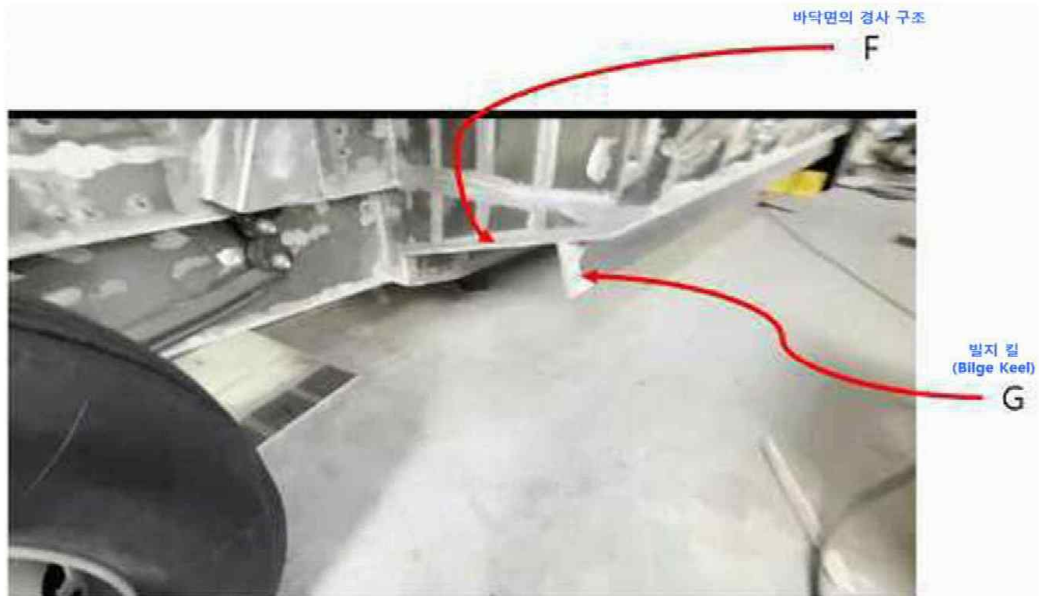
도 2.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전면부 내부를 촬영한 사진



도 4.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후면부 샤시를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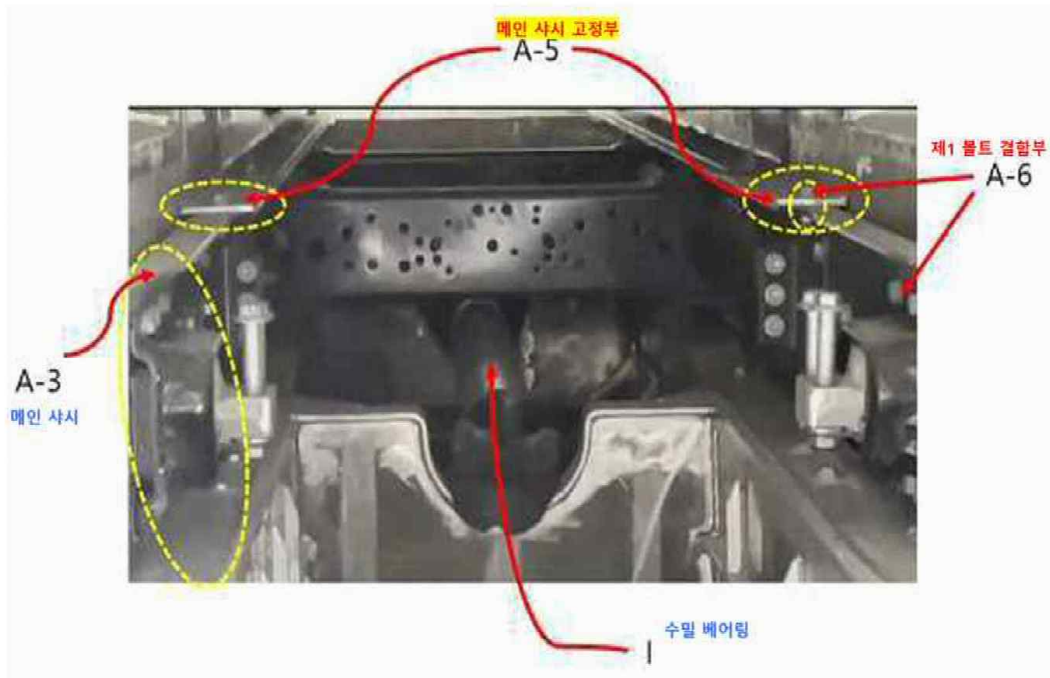
도 5.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부력 공간부와 연료통을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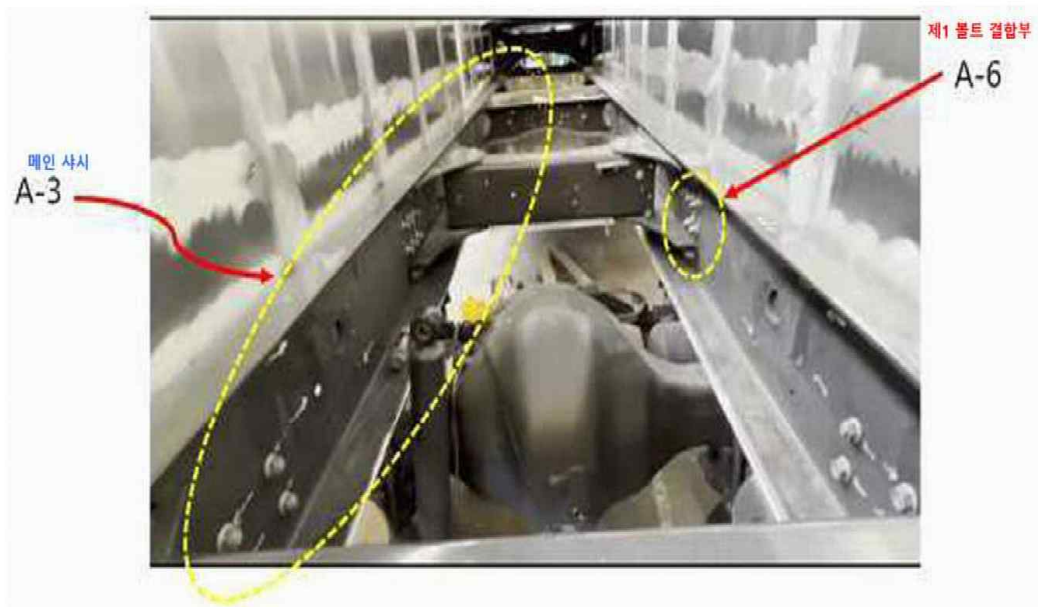
도 6.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부력 공간부 바닥면에 형성된 경사 구조와 밑지 킬(Bilge Keel)을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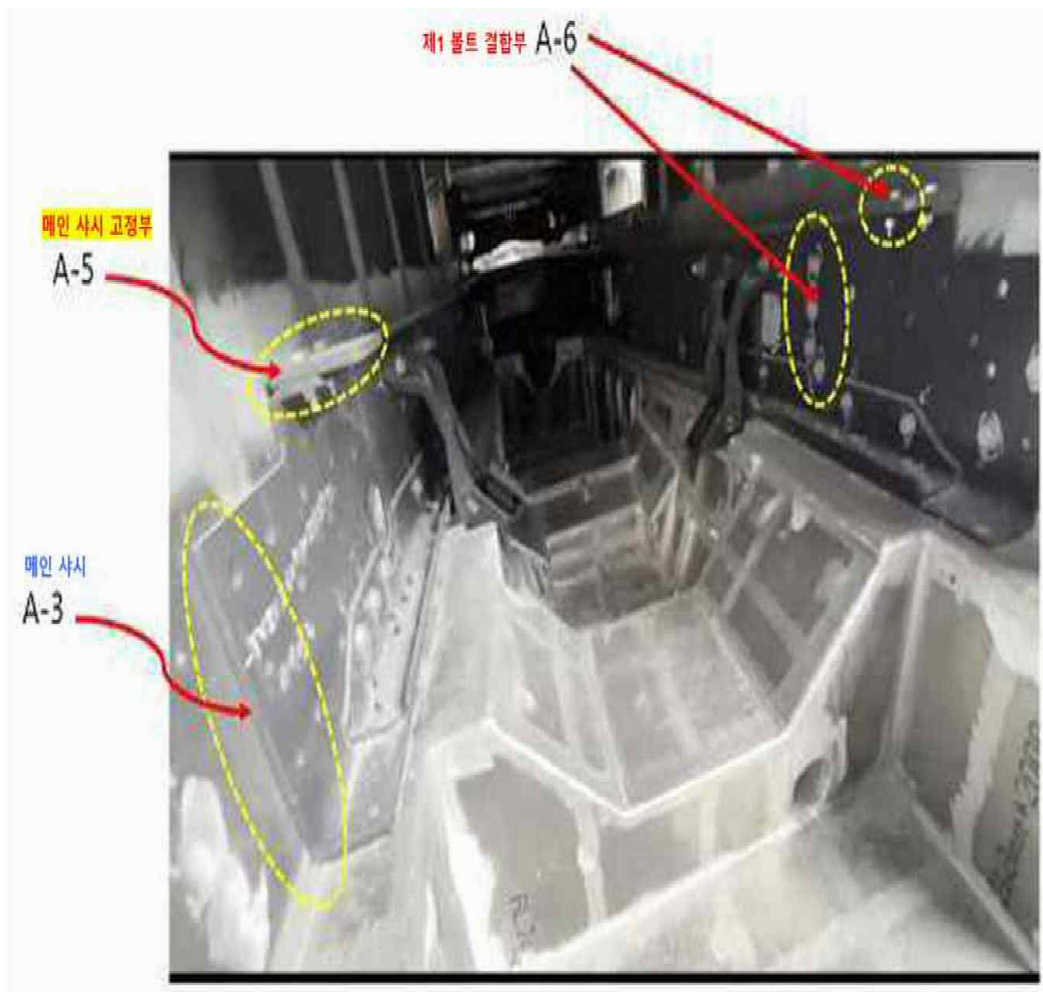
도 7.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부력 공간부, 부력 공간 지지부, 관통홀, 밑지 킬의 배치를 촬영한 사진



도 8.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샤프트 수밀 베어링의 연결구조를 촬영한 사진



도 9.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후면부 샤시를 촬영한 사진



도 10. 확인대상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수륙양용버스의 전면부 내부를 촬영한 사진